

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·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(제19조의2 관련)

1. 시설·장비 기준: 다음 각 목의 시설·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·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·장비는 제외한다.
 - 가. 실험실, 전산실 또는 사무실
 - 나.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
 - 다.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
 - 라.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
2. 연구인력 기준
 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
 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2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3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
 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,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3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(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)을 취득한 사람
 - 4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다.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